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3억까지 부과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10월 23일부터 적용

개요

- '09.4.22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09.10.23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이제까지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천만원 이하로 시작하여 1992년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되어 왔음
-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인 시·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하였음
 - 과징금 부과시 이에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고지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 과징금 부과기관인 세관장과 시·도지사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행정기관간 과징금 중복부과 등의 혼선을 방지하며,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해당 과징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과징금 부과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금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국내 원산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다른 법령의 과징금 규정 〉

법령명	제재대상	처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제24조	법령을 위반한 자가 전기통신설비 업자	10억원 이하 과징금
•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	법령에 위반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5억원 이하 과징금
• 식품위생법 제82조	규격미달, 미표시 물품 판매 등	2억원 이하 과징금
• 관세법 제327조2, 3	법령을 위반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1억원 이하 과징금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축산물처리기준, 규격 등 위반행위	1억원 이하 과징금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및 수출입절서 저해행위	거래금액의 10분의3 이하 또는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이하의 과징금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허위 또는 과장되는 표시광고	매출액의 100분의2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법령을 위반한 원사업자나 수급 사업자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 농산물관질관리법 • 수산물물관질관리법	원산지 허위, 혼동표시 등	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원산지표시 위반횟수에 의한 과징금 가중액 또는 경감액

가. 위반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20% 가중) 병행
2.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20% 가중) 병행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20% 가중) 병행
4.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20% 가중) 병행
5.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재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6.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나. 위반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인 경우로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및 과징금 (50% 경감)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20% 가중)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50% 가중) 병행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및 과징금 (30% 경감)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20% 가중)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50% 가중) 병행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및 과징금 (30% 경감)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20% 가중)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50% 가중) 병행
4.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시정조치 및 과징금 (30% 경감)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20% 가중) 병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50% 가중) 병행
5.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 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납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6.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p>비고 :</p> <p>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p>				